관계부처 합동	**보도참고자료**	(배포) 2018. 2. 23.(금)

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 당	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	과장 신정훈, 사무관 고성민 (044-203-5770, 5776)
	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	과장 김용재, 사무관 박동희 (044-200-2379, 2380)
	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	과장 이수두, 사무관 김현진 (043-719-2201, 2241)
	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	과장 최용석, 사무관 구본찬 (044-200-5610, 5618)
	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	과장 정혜련, 사무관 민동명 (044-201-2271, 2276)
	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	과장 천성환, 서기관 김상욱 (02-2100-7675, 7678)
	원자력안전위원회	과장 한정호, 사무관 김 상 (02-397-7351, 7357)

세계무역기구(WTO)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및 공개

- 세계무역기구(WTO)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차별성 조항 등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(SPS)협정에 불합치 한다고 판정
- 우리 정부는 **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상소 제기**키로 **결정**
- 이번 판정으로 **현행 수입규제조치**는 **해제되지 않으며, 정부는**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 오염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도록 **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음**

□ '18. 2. 22. 16:00(제네바 시간), 세계무역기구(WTO)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(DS495)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세계무역기구 전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.

< 분쟁의 주요 경과 >

- '11. 3.14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,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**수입규제조치 실시** (수입시 방사능 검사, 일부 품목 수입금지)
- '13. 9.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('13.8.8) 후 우리 정부는 **임시특별조치*** 시행
 * 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
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등 요구
 ③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(370→100Bq/kg)
- '15.5.21 일본 정부, 우리측 조치 중 일부*에 대해 **WTO 제소**
 *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
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

□ 보고서에서 세계무역기구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**차별적**이며, 필요이상으로 **무역 제한적**이고, 정보공표 등 **투명성에서 미흡**하다고 보고,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.

○ 그러나,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.

*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의 환경 및 식품 영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우리 측 주장을 인용하여, '11.3월 원전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는 정부가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

□ 우리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**합동 대응팀을 구성**해 **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상황 및 수산물 관련 문제점을 다각도로 제기**해 왔다.

○ 앞으로도 정부는 **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**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기로 했다.

① 첫째, 정부는 **일본 원전상황 지속,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** 등을 감안할 때, 이번 세계무역기구 **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**는 입장이며,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**상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예정**이다.

* 이번 패널 판정 결과에 대해 양 당사국은 패널 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,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 회람됨 (다만 최근 세계무역기구(WTO) 상소 건 급증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음)

② 둘째,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**기존 수입규제조치는** 상소 등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**그대로 유지할 것이다.**

③ 셋째, 앞으로 정부는 **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,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**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**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다. 끝.**

참고 1 ‖ WTO 분쟁 경과

□ 우리측 조치

○ ‘11. 3.14. 동일본 대지진(‘11.3.11)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, 일본산 식품에 대한 **수입규제조치* 시행**

* ① 일본산 식품 일부 수입금지(**수산물 8개현 50품목**, 농산물 13개현 26품목)
② 그 외 일본산 식품 수입 시 세슘 검사, 미량 검출 시 **기타핵종 검사 요구(농산물, 가공품)**
③ 일본산 식품 세슘기준 100Bq/kg(국산, 타국가산 370Bq/kg)

○ ‘13. 9.9. 도쿄전력 원전 **오염수 유출 사실 발표**(‘13.8.8.) 이후, **총리 주재** 장관회의 및 당·정협의를 거쳐 강화된 **임시특별조치*** **시행**

* ① **수산물**은 8개현 **모든 품목** 수입금지
② 세슘 검출 시 **기타핵종 검사 대상 확대**(**수산물**·축산물 추가)
③ 국산, 타국가산 식품도 세슘 기준 강화(370→100Bq/kg)

□ WTO 분쟁 경과

○ ‘15.5.21. 일본 정부, 우리측 조치를 WTO 제소(양자협의 요청)

○ ‘15.6.24.~25. 한·일 간 양자협의 결과 합의 결렬

○ ‘15.8.20. 일본 측 WTO 패널설치 요청, ‘15.9.28. 패널 설치

○ ‘16.2.8. 패널 구성

* Ehlers(의장, 우루과이), Boutrif(위원1, 튀니지/프랑스), Minn(위원2, 싱가포르)

○ ‘16.7.12.~13. 제1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

○ ‘17.2.9~10. 패널 전문가회의

○ ‘17.2.13~14. 제2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

○ ‘17.10.16. 패널 보고서 배포

○ ‘18.2.22. 패널 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

참고 2 패널(1심) 판정 결과

□ 분쟁 대상 및 일본 제소 내용

○ 일본은 우리측의 조치 중 ① 8개현의 28종* 수산물 수입 금지 ② 세슘 미량 검출 시 스트론튬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등이 **WTO 위생 및 식품위생(SPS) 협정 위반**임을 **주장**

* 전복, 알라스카 명태, 날개・눈・참・가・황다랑어, 금눈돔, 멸치, 청새리상어, 악상어, 첨연어, 멍게, 방어, 살오징어, 전갱이, 정어리, 대구, 참굴, 꽁치, 가리비, 망치고등어, 고등어, 청・황새치, 밤나무・참・대문어

○ 일본은 상기 조치들이 SPS 협정의 ① 차별성(제2.3조) ② 무역제한성(제5.6조) ③ 투명성(제7조 및 부속서2) ④ 검사절차(제8조 및 부속서3) 조항에 위반이라고 제소

□ 패널의 판정 요지

쟁점	관련 규정	판정내용	WTO협정 합치여부
차별성	SPS협정 제2.3조	▪ 일본산과 다른 국가산 식품이 모두 유사하게 낮은 오염 위험을 보이나, 일본산 식품에만 수입금지 및 기타핵종 추가 검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	불합치
무역 제한성	SPS협정 제5.6조	▪ 세슘 기준 검사 조치만으로도 한국의 적정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, 수입금지 및 기타핵종 추가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이상으로 무역제한	불합치
투명성	SPS협정 제7조·부속서2	▪ 한국의 기타핵종 검사 기준치, 수입금지 품목 등에 대한 정보 공표 누락, 일본 질의에 대한 미답변 사례 등은 투명성 위반	불합치
검사 절차	SPS협정 제8조·부속서3	▪ 한국이 요구하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, 운영방식 등이 절차상 불합리하지 않음	합치

참고 3 상소 등 향후 분쟁해결절차

□ 상소 절차

○ 한·일 양 당사국은 패널의 판정에 대해서 패널보고서가 회람된 날부터 **60일 이내에 상소**할 수 있음

○ **상소심 판정**은 상소 제기 후 **원칙적으로 3개월(90일) 이내**에 도출되어야 함

○ **상소심 판정 후 30일 이내**에 WTO 분쟁해결기구(DSB) 회의에서 **상소보고서가 채택**되어야 함

○ 상소 보고서가 채택되면 WTO 협정 위반으로 판정된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국이 **협정에 합치하도록 이행**해야 함

□ 이행절차

○ 상소보고서 채택 후 30일 이내에 관련국은 DSB회의에서 이행의사 표명

○ 즉시 이행이 어려울 경우 관련국은 **합리적 이행기간**을 부여받음

- 합리적 이행기간은 당사국간의 협의(또는 DSB 중재)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며, 협정상 최대 15개월까지 주어질 수 있음

○ 이행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, 분쟁 당사국 간 이행분쟁을 추가로 진행하거나, 제소국은 양허정지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음

* 양허정지의 수준은 합리적 이행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이행시 제소국이 달성가능하다고 본 무역수출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함